
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7562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9. .

제안자 :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	발의일	심사경과
전기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	9741	정운천의원	2021.4.27.	-제388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1.6.28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-제400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(2022.9.5.) 상정, 축조심사 및 의결(대안반영폐기)
	14582	송갑석의원	2022.1.26.	-제397회 국회(임시회) 제5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2.5.19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-제400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(2022.9.5.) 상정, 축조심사 및 의결(대안반영폐기)

가. 제400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(2022. 9. 5.)
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
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우리
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.

나. 제400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(2022. 9. 7.)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의 담당기관이 이원화 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,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.

현행법은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이를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함 (안 제12조제1항, 제5항, 제7항 및 제13항).

나.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제도를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함(안 제22조제3항).
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“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 (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도록 하여야 한다”를 “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중 “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”를 각각 “안전공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“제1항, 제5항, 제7항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”을 “제9항 및 제10항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”을 “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	제12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
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「전기사업법」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(이하 “기술기준”이라 한다)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<u>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(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 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(이하 “정기점검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</u>	⑤ <u>안전공사</u> -----

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(생략)

⑦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⑧ ~ ⑫ (생략)

⑬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항, 제5항, 제7항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전기판매사업자”는 “구역전기사업자”로 본다.

제22조(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(자가용전기설
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안전공사-----

-----.

⑧ ~ ⑫ (현행과 같음)

⑬ -----
제9항 및 제10항-----
-----.

-----.

제22조(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비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)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,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, 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④ ~ ⑧ (생략)

-----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